

의안 번호	2557	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2. 27.(금) 강혜순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2. 27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3. 9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 (강혜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약칭 사용 정비(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)
-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및 기준 구체화(안 제2조제2항)
 -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 신설(별표 1)
- 상위법령 인용 조항 불일치 사항 등 정비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근거법규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8조 및 제29조의2
 - 참고자료
 -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」(행정안전부)
 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-4025(2025. 12. 4.)호
- 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미정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따른 지급 대상,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,
- 안 제1조, 제2조제1항 및 제6조에서는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, 상위법령 인용 조항 불일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자 하였음.
-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지방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
제18조(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)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,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,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서 “근무지 내 국내 출장”이란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 및 섬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

제29조의2(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)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.

참 고 자 료

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」 (행정안전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, 월지급한도액은 시장(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)이 따로 정한다.

[별표 2]

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(제2조제2항 관련)

구 분	지급 대상	지급방법
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	읍·면·동에 근무하는 공무원(내근 직원 제외)	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,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,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.
	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(내근 직원 제외)	
	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	

※ 지급대상 :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,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(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)

※ 지급액 :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,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, 업무의 특성,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

「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안) (2025. 12.)」

□ 현 황

- 행정안전부는 상시적 관내 출장 사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특성을 고려,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」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
 -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, 월 지급 한도액은 기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

□ 문제점

- 행안부 표준안은 상시출장 여비 지급 대상은 조례로 정하고, 월 지급 한도액은 기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으나,
 -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등은 지급 대상을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 편의대로 규정할 우려
 -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등은 ‘상시출장을 요하는 소속 공무원’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에 따른 대상자 지정 및 월액 여비 지급 가능

□ 개선방안

- 조례에 월액 여비 지급 대상 등 기준이 없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등은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고
 - 상시출장 여비 지급 대상 기준이 불분명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등은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